

방역패스 (접종증명 · 음성확인제) 확인 방법 안내

□ 방역패스 종류

- ① 전자증명서(QR), ② 종이증명서, ③ 예방접종스티커, ④ 문자

□ 방역패스 확인 방법

① 전자증명서(QR)* (대상 : 접종완료자)

* '22.1.1부터 COOV를 통해 완치자, PCR 음성확인자, 접종예외자 확인 가능

- (QR 리더기 있는 경우) 질병청 전자출입명부 앱(KI-Pass) 설치([참고 1](#)) 후 이용자(손님) QR을 스캔하여 '접종완료' 여부(음성, 글자 등)를 확인
- (QR 리더기 없는 경우) 이용자(손님)의 전자증명서(COOV 앱, 네이버·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)를 통해 '접종완료' 여부 육안 확인 ([참고 2](#))

② 종이증명서 (대상 : 접종완료자, 완치자, PCR 음성확인자, 접종예외자)

- 보건소·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*(내국인), 예방접종 확인서*(외국인), PCR 음성확인서**, 격리해제확인서(완치자),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통해 방역패스 여부 확인 ([참고 3](#))

* 주민센터,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(nip.kdca.go.kr)에서 발급 가능

** 결과 통보([\[예\] 12.12 10시](#))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([\[예\] 12.14 24시](#))까지 유효

③ 예방접종스티커 (대상 : 접종완료자)
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 등)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로 확인 ([참고 4](#))

* 신분증 지참 후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를 방문하여 부착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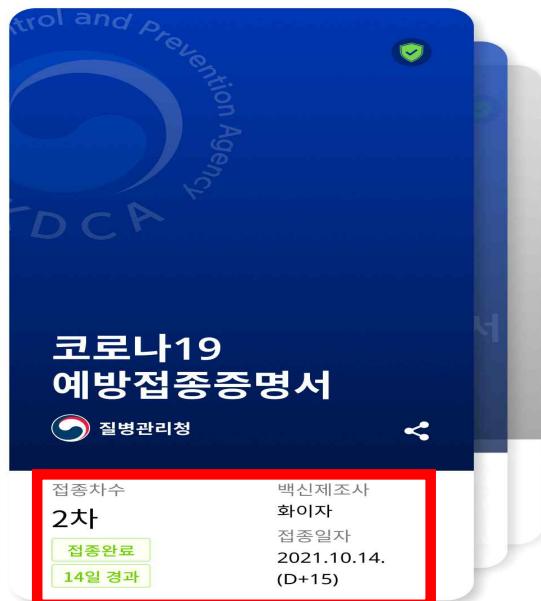
④ 문자 (대상 : PCR 음성확인자, ~'21.12.31까지)

- 보건소·의료기관에서 보낸 PCR 음성 확인 문자로 확인 ([참고 5](#))

* 결과 통보([\[예\] 12.12 10시](#))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([\[예\] 12.14 24시](#))까지 유효

참고 2 전자 증명서 확인 방법

① 질병관리청 앱(COOV) 예방접종증명서(확인서)



② 전자출입명부 플랫폼(카카오)



③ 전자출입명부 플랫폼(네이버)



참고 3 종이 증명서 확인 방법

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

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6호서식] <개정 2020. 9. 11.>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

②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

제 호

No.

COVID-19 예방접종확인서 Confirmation of COVID-19 Vaccination

성명 Name		생년월일 Date of Birth (Month/Day/Year)	
		성별 Sex	
주소 Address			
접종명 Vaccine	접종차수 Vaccination Series	접종일 Date (Month/Day/Year)	접종국가/기관 Country/Clinic

위 사람은 위와 같이 예방접종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- 예방접종확인서는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국내 사용을 목적으로 국문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. 출국 등 국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접종국가에서 제공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예방접종확인서 위변조, 위변조한 예방접종확인서 행사 시 「형법(제225조, 제229조)」에 따라 형사처벌*될 수 있으며,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9조, 제83조)」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**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. 외국인의 경우 「출입국관리법(제11조 및 제46조)」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출국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* 예방접종확인서 위변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, 위변조한 예방접종확인서 행사 시 10년 이하의 징역
(동일인인 경우 경합범으로 처벌 가능)

※ 또한, 예방접종확인서의 위변조, 위변조한 확인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, 본인의 확진으로 인하여 타인
에게 전파된 경우,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에게 본인 및 전파된 사람의 진료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※ Fabrication, falsification, or fraudulent submission of this document will lead to imprisonment of up to 10 years (punishable as concurrent crimes), a fine of up to 100,000 KRW, and/or claims for damages such as the cost of medical care provided to the patients infected as a result. Deportation or entry ban will also be imposed in the case of foreign nationals.

* Relevant laws: Criminal Act (Articles 225, 229),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(Articles 49, 83), Immigration Act (Articles 11, 46)

년 Year 월 month 일 day

지자체장

직인
Seal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

③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

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

성명(성별) : ○○○(남,여)

생년월일 :

YYYY-MM-DD

검사일자 : YYYY-MM-DD

검체종류 : 비인두(구인두)도말

검사방법 : RT-PCR

검사결과 : 음성

검사결과 등록일시 : YYYY-MM-DD HH:MM

* 유효기간 : 검사결과 등록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

상기 인에 대한 검사결과를 위와 같이
확인합니다.

< 보건소에서 발급된 음성확인서는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조에 따라 코로나19 발생과 유행
방지와 방역을 위한 국내용 공익 목적으로 한정됩니다.>

검사의뢰기관 : ○○ 병원(TEL: 00-000-0000)

○○○ 보건소(TEL: 00-000-0000)

검사기관 : ○○○

④ 격리해제 확인서

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0-1판 (서식-20호)

격리해제 확인서 CONFIRMATION OF RELEASE FROM ISOLATION			
성명 NAME		생년월일 DATE OF BIRTH	
격리해제시 장소명 LAST PLACE OF ISOLATION BEFORE RELEASE	(예시) 자택, ○○의료원 또는 중부권·국제1 생활치료센터 (Example: Home, ○○ Medical Center, Central Region/International 1 Residential Treatment Center, etc.)		
격리시작일 ISOLATION START DATE		격리해제일 ISOLATION END DATE	
<p>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해제 되었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>This is to confirm that the above-identified person has been released from isolation according to the criteria for releasing COVID-19 case-patients from isolation.</p> <p>※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추가적인 감염전파의 우려가 없으며, 본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. Persons who are discharged/released from isolation according to the COVID-19 isolation release criteria no longer pose a risk for transmission to others. This document may be accepted in lieu of proof of negative PCR test result.</p>			
발행일: (예시) 20 .○○.○○			
△△ 보건소장 (인)			

⑤ 접종증명 ·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

접종증명 ·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

성명		생년월일	
유효기간	<i>(기타 건강상의 이유자는 발급일로부터 180일을 더해 만료일을 표시)</i>		

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접종증명 · 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임을 확인합니다.

- ※ 본 증명서를 지참한 경우 별도의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 없이 접종증명 · 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을 출입 ·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- 다만 동 확인서의 경우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·나이트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·무도장) 출입, 의료기관 · 요양시설 등의 환자 · 입소자 면회, 노인 · 장애인 시설의 출입*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*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(12세 미만 아동 장애인 등)는 사용 가능

발행일: 20 . . .

△△ 보건소장 (인)

참고 4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방법

<신분증 뒷면에 부착된 스티커 (예시)>

접종완료 21.06.04	제ABC00001호 홍길동  질병관리청	추가접종 21.12.20	제ABC00001호 홍길동  질병관리청
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	---

참고 5 PCR 음성확인 문자 확인방법

<의료기관 PCR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(예시)>

(발신번호 02-1233-4567, 발신일시 '21.11.14. 10:00) 홍길동님(98.10.20/남)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음성입니다.(검사일자 21.11.13)	 진주시 알림톡 도착 [진주시보건소] [REDACTED] 님 코로나19 검사 결과 '음성(Negative)'입니다. - 검사일자: 2021.12.12 - 검사방법: Real-time RT-PCR - 문의사항: 055-749-5714 * 자가격리자(밀접접촉자, 해외입국자)로 통보 받으신분들은 검사결과 음성이어도 격리기간유지 필수입니다.
---	--